

'91 위생시책및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방향

정 도 영

보사부 식품유통과장

I. '91년도 식품위생시책

1. 기본방향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 건강과 레저, 그리고 식·음료등 안락한 식위주 생활에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추세로서 최근 우리 국민의 식·음료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높으며,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입개방화의 여파로 외국의 식품등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호도 다양화 되는 순기능도 있는 반면 과생되는 문제점 또한 적지않아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요청됨에 따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은 여타 공산품과 달리 한 두개 공정에서 그 품질이나 안전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식품의 재배나 사육단계에서부터 유통, 조리, 섭취의 단계까지 취급자와 기구, 용기의 위생상태, 토양이나 수질등의 환경오염, 농약이나 항생제 사용, 하수의 처리문제등 여러 요인에 의거 위생수준과 안전성 여부가 결정되며 위생과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요인들은 각기 따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복합적으로 상호 밀접한 연속선상의 한과정으로 발생하는 것들로서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인 고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품위생행정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생과 안전성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원료식품인 농축수산물물의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물질등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제도의 시행, 수입, 제조, 가공, 유통단계에서의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한 검사확인등의 단속방법의 과학화와 체계화, 가공식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식품의 성분규격과 표시기준등의 보완 발전, 그리고 식품의 재배부터 최종 유통소비까지 안전상의 문제를 제공 하는자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효율적 규제제도등 각 방면의 기본규제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그러하듯이 위생행정 역시 이러한 제도나 규정에 의한 규3제나 단속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울러 식품의 각 단계에서의 모든 취급자들이 스스로 식품위생과 안전의 최일선 파수꾼임을 자각하고 자발적인 참여

와 협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만이 본질적인 식품 위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생산, 유통의 취급자, 정부 그리고 소비자의 3요인이 적절한 상호견제와 원만한 협조체제를 갖고 상호 노력할 때 식품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없어질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접근방법을 위생행정 기본방향으로 잡고 '91위생행정을 펴나가고자 한다.

2.91년도 위생시책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급변하는 식생활 형태와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입식품의 증가등 위생행정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자가기준 및 규격을 검토 받아야 하는 대상식품, 안전검사기관의 체계화 및 절차 개선

— 식품의 표시기준과 허위, 과대표시 및 광고의 범위 세분화

— 업종별 시설기준의 조정

— 건강보조식품의 사전검사 제도 실시등

나. 식품공전 및 첨가물공전 보완

1) 식품공전

제조원료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단계별 위생기준인 현행 개별식품의 규격기준을 선진외국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도록 보완코자 하며 특히 '91년도에는 냉장냉동식품등 유해가능요소가 있는 식품들의 위생기준을 중점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할 것이다.

2) 첨가물 공전

식품첨가물의 적정 사용 유효도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용되기 쉬운 보존료등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강화하거나 보완하여 사용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FAO/WHO, 미국등의 기준을 참고하고 선진외국의 식품관련 정보를 수시 입수, 분석하여 유해성에 문제가 된 첨가물에 대하여는 첨가물의 지정을 취소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첨가물의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다. 식품오염물질 모니터링 제도 확대 실시

1985년부터 국립보건원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소가 연계하여 실시중인 식품중의 농약 및 중금속에 대한 잔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의 농축수산물등 모든 식품에 있

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과악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사대상식품을 늘리고 또한 검사대상 유해물질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91년부터는 농약, 중금속과 함께 특히 축산물중 항생물질 수입곡류의 아트라톡신등의 조사도 실시할 것이며, 모니터링 결과나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예상되는 식품과 유해물질에 대한 간이분석방법이나 동시 다수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모니터링 검사시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고자 한다.

라. 수입식품관리 강화

1) 검사기능 향상

그동안 시·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던 수입식품 이화학적검사등 정밀검사업무를 검역소에서 자체 처리키 위하여 전문인력과 정밀검사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검사공무원에 대하여도 KAIST토픽콘트롤 센터에서 6개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력과 장비보강을 마무리하였는 바, '91년도부터는 수입식품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절차와 규정도 개선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2) 수입식품 관련 전산화
수입식품 관련 각종 통계,

검사업무의 표준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사부, 보건원 및 3개 검역소를 연결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91년 말까지 도입, 운용할 계획이다.

3) 수입식품검사업무 발전 추진반 구성운영

보사부, 보건원, 검역소의 담당과장 및 식품연구소 정보관리 실장등으로 수입식품검사업무 발전 추진반을 구성하여 식품별, 검사내용별 표준화, 유해물질별 검사우선순위 및 모니터링 협의분담, 업무추진상의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등 필요사항을 수시 협의, 결정케 하여 검사업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마. 식품위생관계종사자 교육 및 식품위생홍보

1) 종사자 교육

식품위생관련 업소의 업종종사자에 대하여 위생관념을 함양하고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여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높이며 국민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고취하여 식생활 문화의 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실시하여 오고 있는 종사자 위생교육을 '91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되 교육은 가급적 피교육자가 거주하는 시·도에서 하도록 하고 교과

목이나 시간, 강사 선정등에서도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도록 하며 직종별로 교과목을 구분하여 피교육자의 업무종사내용과 관련이 높은 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도록 새로운 교재 개발과 교육방법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피교육자의 교육비부담경감을 위하여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일부는 시도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재원도 활용토록 하겠다.

2) 식품위생홍보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제조, 가공, 조리업자등 식품관련 종사자의 위생 및 안전성 의식의 향상과 함께 일반국민들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의식있는 구매활동과 노력도 중요한 바, 식품위생과 안전성에 관련된 국민들의 위생관리기준등에 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교육홍보용 매체로 적극 개발하겠으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중 잔류유해물질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을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우려를 갖는 국민이 있으므로 식품의 잔류유해물질등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내용의 교육홍보 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유인물(주로 리플렛)제작을 위주로 하되 내용중 지속적인 효과나 체험적인 사항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스터나 VTR필름형태로 제작하여 각급 교육기관 소비자단체, 공중집결장소등에 배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문제화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는 TV나 라디오등에 관계자가 직접 출연하여 대담이나 해명등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으며, 신문, 잡지, 반상회보등에도 식품위생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게재토록하는 등 홍보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바. 부정, 불량식품의 지도 단속 강화

'91년도에도 부정불량식품과 퇴폐, 변태영업행위등 범인성 유해환경에 대하여는 범죄와의 전쟁 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행정기관간의 감시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관리 기능도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사. 음용수 관리

1) 수도물의 수질관리

수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수질검사 외에 보사부가 연2회 이상 543개 정수장 및 1,300개 가정수도권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솔직하게 국민에게 공표하여 국민의 수도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나갈 것이며, 농약, 중금속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여 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을 신속하게 보완, 개선함으로써 정수장등 음용수 관리자가 이를 준수하여 수도물 등의 질적향상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또한 음용수의 수질검사업무의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검사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민간 연구소등을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검사결과의 신뢰성등도 확보하겠다.

2) 간이급수시설 관리

간이급수시설은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90년 그간 설치되었던 총 35,553개 소중 상수도보급, 시설노후 등으로 그간 4,842개소가 폐소되어 현재 30,711개소가 사용중에 있다. 간이급수도 농어촌 지역의 환경오염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토록

할 것이며 '90.8~9월 전국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보수대상시설로 판명된 총 7,136개소(보수비 33 억원)를 시·도지사 책임하에 연차적 계획에 의거 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다.

아. 공중위생업무 관리강화
공중이용시설물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시설의 흡연구역지정, 위생용품의 제조시설 기술 및 제품규격기준의 보장, 전자유기기의 제조, 수입시 프로그램 내용의 건전성 여부의 사전검사 강화등을 골자로 하여 '90도중에 공중위생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용업소의 개설허가에서부터 영업행위까지 변태, 퇴폐업의 근절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퇴폐조장 시설에 대하여는 강제철거, 폐기조치 시행

— 전자유기 기구의 프로그램 내용의 건전성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

— 대형 건축물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환경기준 준수 여부등 위생관리에 대한 확인 강화

— 종합유원시설의 정기 안전성 검사여부 확인 철저등

II. 식품수입증가에 따른 대처방안

1. 수입식품현황

몇년사이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식품물량은 금액기준으로 '87년 20억불, '88년 28억불, '89년 35억불, '90년 38억불등 계속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소득향상에 따라 식품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 국제가격보다 저렴한 외국식품의 유입, 선진국의 개방압력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물의 개방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 증가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가 급진전되므로서 예상되는 원료식품의 오염과 수입식품의 다양화 등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될 것이다.

2.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

가. 국내식품업계의 동향

국내가공식품의 원료는 농축수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 농축수산물은 선진외국등에 비하여 값이 현저히 높아(보통 2내지 3배정도) 원료면에서 부터 경쟁력이 뒤떨어지

고 또한 가공식품원료인 농산물은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국내업체는 값싼 원료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외국가공식품류(완제품)는 거의 제한없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국내제품과의 경쟁에서 월등히 유리하므로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증가추세에 있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에 대한 잔류농약등 각종 유해물질의 완벽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수천종에 이르는 다양한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사전정보수집, 필요항목의 집중검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등 능률적인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다. 국제통상마찰 발생증가
국내의 식품관련규격 및 안전성 기준이 국제규격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수입식품 안전성검사의 강화에 따라 상대국으로부터 기술적 무역장벽의 구축이라는 오해를 유발하는 요인등이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초래하고 있다.

3. 대처방안

가. 국내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장기적으로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므로 수입식품의 다양성 및 고급성등은 대폭 수용하여 이를 국내기업의 경쟁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이용하고, 식품공전등의 각종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완하시켜 권장사항을 늘려가도록 하겠으며, 농축수산물의 개방정책이 진전됨으로써 양질의 값싼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원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써 식품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선진외국식품과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기능의 강화

수입식품에 대한 각종 유해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유해식품의 수입 및 유통을 미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망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수입식품 정보관리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위해 주요 수입국에 해외주재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수입식품의 안전성관리를 위해 보사부, 검역소, 식품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수입식품검사업무발

전추진반을 구성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관리를 위한 제도, 체제등에 대한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있는 국립검역소에 안전성검사 관련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표준검사기법 등을 개발하여 농약과다사용, 환경오염등에 의하여 오염된 유해식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코자 한다.

다. 통상마찰요인의 해소

식품 및 첨가물공전을 식품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유지하는 조건에서 국제규격의 수용가능부분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상호주의 원칙하에 수출국 검사기관을 지정·활용하여 수출국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수입식품 관련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수입식품과 관련된 규격등 제반절차를 충분히 주지시켜 수입식품검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